자산보관 •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02-2004-8963/0991

1.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프랭클린템플턴 월지급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)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[채권형] 집합투자기구
다. 보관 •관리기간: 2011.07.25 - 2012.07.24
라. 집합투자업자: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(주)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한국투자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미래에셋증권, 하나대투증권, 하나은행, 대구은행, 한국씨티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 미래에셋생명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1.07.26	제 33 조 2(분배금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과 별도로 매 1 개월 단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(이하 “분배금”이라 한다)으로 분배한다.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,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월 분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. 1.~2. (생략) 3. 분배금 지급일 : 분배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과 별도로 매 1 개월 단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(이하 “분배금”이라 한다)으로 분배한다.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,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월 분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. 1.~2. (좌동) 3. 분배금 지급일 : 분배기준일로부터 **제 6 영업일**에 지급 ② (좌동)

		기준일로부터 **제 9 영업일** 에 지급 ② (생략)	
2011.07.26	<부 칙> 제 1 조(변경계약의 시행일)	**(신설)**	**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1 년 7 월 일부터 시행한다.**
2012.05.03	제 49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**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**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**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**
2012.05.03	<부 칙> 제 1 조(변경계약의 시행일)	(신설)	**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2 년 5 월 일부터 시행한다.**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회계감사인의 선임 •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삼일회계법인	1 년	4,950,000 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□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□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함
□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공정함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□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없음
□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